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[시행 2019. 6. 28.] [조례 제943호, 2019. 6. 28., 일부개정]

부산광역시 수영구(가족행복과), 051-610-436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 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. 〈개정, 2014, 11, 20.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저소득세대"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제3조의 대상을 말한다. 〈개정, 2014. 11. 20.〉
- 2. "지원대상자"란 저소득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 <개정, 2014. 11. 20.>
- 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, 6, 28, >
 - 1. 만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
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〈전문개정, 2014. 11. 20. 〉
- 제4조(지원대상자 결정)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 강보험공단 남부산지사장(이하 "지사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유무를 지사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한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, 기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한다. <전문개정, 2014. 11. 20.>
- 제5조(지원시기 및 방법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매월 지원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매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. <전 문개정, 2014. 11, 20.>

제6조 <삭제, 2014, 11, 20.>

부칙 <제943호, 2019. 6. 28.>

부칙

-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<제750호, 2014. 11. 20.>
-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<제943호, 2019. 6, 28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)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사장이 통보하는 최초 명단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